송파 **헬리오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제11항)에 따라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2013.05.31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청약가점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40%만 가점제가 적용됨)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1.12.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약방법의 변경이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5월 31일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 평형으로 축소되었으며,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이 4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변경되어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 2015년 2월 27일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 →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1년, 12회 납입'으로 완화
    -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02.27.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15.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나,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개정 2012.09.25)에 따라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 2009.4.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12.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 우선 배정 대상 주택형신청시 1층 우선 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 16994호(2015.11.1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84개동 총 9,510세대(조합분양 6,543세대, 임대주택 1,401세대, 보류지 8세대 포함) 중 아파트 일반공급 1,558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9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분 15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9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 46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5001291–01	39.1000A	39A	39.1000	22.2700	61.3700	28.9200	90.2900	21.4888	155	16	16	16	5	102	12
	2015001291–02	39.1200B	39B	39.1200	22.4100	61.5300	28.9400	90.4700	21.5448	18	1	–	1	–	16	5
	2015001291–03	39.8600C	39C	39.8600	22.6000	62.4600	29.4900	91.9500	21.8704	4	–	–	–	–	4	0
	2015001291–04	39.1700D	39D	39.1700	22.2700	61.4400	28.9800	90.4200	21.5133	24	2	2	2	1	17	1
	2015001291–05	49.1900A	49A	49.1900	23.2800	72.4700	36.3900	108.8600	25.3754	2		–		–	2	0
	2015001291–06	49.2900C	49C	49.2900	23.6200	72.9100	36.4600	109.3700	25.5295	21	2	2	2	–	15	5
	2015001291–07	59.9600	59	59.9600	24.1400	84.1000	44.3600	128.4600	29.4477	174	18	18	18	5	115	39
	2015001291–08	84.9800A	84A	84.9800	22.9900	107.9700	62.8600	170.8300	37.8058	67	7	7	7	2	44	26
	2015001291–09	84.9900B	84B	84.9900	24.7700	109.7600	62.8600	172.6200	38.4326	3	–	–	–	–	3	1
	2015001291–10	84.9900C	84C	84.9900	24.8800	109.8700	62.8600	172.7300	38.4711	32	3	4	3	1	21	11
	2015001291–11	84.9900D	84D	84.9900	25.1100	110.1000	62.8600	172.9600	38.5516	146	15	15	15	4	97	48
	2015001291–12	84.9800E	84E	84.9800	24.7500	109.7300	62.8600	172.5900	38.4221	32	3	2	3	1	23	22
	2015001291–13	84.9500F	84F	84.9500	25.2200	110.1700	62.8400	173.0100	38.5761	131	14	14	14	4	85	24
	2015001291–14	84.9800G	84G	84.9800	23.4500	108.4300	62.8600	171.2900	37.9669	18	2	2	2	–	12	9
	2015001291–15	84.9800H	84H	84.9800	23.7300	108.7100	62.8600	171.5700	38.0649	3	–	–	–	–	3	1
	2015001291–16	84.9400I	84I	84.9400	22.7200	107.6600	62.8300	170.4900	37.6972	3	–	–	–	–	3	1
	2015001291–17	84.9600J	84J1	84.9600	22.7000	107.6600	62.8400	170.5000	37.6972	28	3	2	3	1	19	12
	2015001291–18	84.9600	84J2	84.9600	22.7000	107.6600	62.8400	170.5000	37.6972	28	3	2	3	1	19	12
	2015001291–19	84.9800K	84K	84.9800	23.0300	108.0100	62.8600	170.8700	37.8198	36	3	4	3	1	25	11
	2015001291–20	84.9700L	84L	84.9700	23.7500	108.7200	62.8500	171.5700	38.0684	33	3	4	3	1	22	8
	2015001291–21	110.6600A	110A	110.6600	29.6000	140.2600	81.8600	222.1200	49.1122	330	–	34	–	10	286	15
	2015001291–22	110.4400B	110B	110.4400	30.6400	141.0800	81.6900	222.7700	49.3993	186	–	20	–	6	160	9
	2015001291–23	130.0600	130	130.0600	33.8500	163.9100	96.2000	260.1100	57.3932	84	–	8	–	3	73	4

※ 상기 주택형 중 '84.9600J', '84.9600'형의 사업시행인가시 타입은 각각 상기 약식표기인 '84J1', '84J2'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	동(라인)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계약시	'16.01.04	'16.06.03	'16.11.03	'17.04.03	'17.11.03	'18.04.03	'18.09.03	입주지정일
39A	103(1~5)	1층	1	270,392,000	147,008,000	417,400,000	20,870,000	20,87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125,220,000
		3층	1	288,336,000	156,764,000	445,100,000	22,255,000	22,255,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133,530,000
		4층	1	291,316,000	158,384,000	449,700,000	22,485,000	22,485,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134,910,000
		5~10층	5	294,296,000	160,004,000	454,300,000	22,715,000	22,715,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11~20층	10	295,850,000	160,850,000	456,700,000	22,835,000	22,835,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137,010,000
	103(6)	2층	1	276,416,000	150,284,000	426,700,000	21,335,000	21,335,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128,010,000
		5~10층	4	291,316,000	158,384,000	449,700,000	22,485,000	22,485,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134,910,000
		11~20층	1	292,806,000	159,194,000	452,000,000	22,600,000	2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209(1~5)/ 210(1~2)	1층	4	274,926,000	149,474,000	424,400,000	21,220,000	21,22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127,320,000
		3층	4	292,806,000	159,194,000	452,000,000	22,600,000	2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5~10층	8	288,830,000	162,470,000	461,300,000	23,065,000	23,065,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138,390,000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구 분	일 시	장 소
특별공급	2015.11.17(화) / 10:00~14:00	송파 헬리오시티 견본주택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연락처 02–449–7440]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5.11.17(화) / 16:00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 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순으로 추첨함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일반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19조 제6항에 의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함.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함.(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7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또는 세대원(다음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
-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및 「장애인 복지법」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로 주택공급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주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일반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계약체결일 : 2015.12.01(화) ~ 2015.12.03(목) (3일간, 10:00~16:00,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39A	39B	39C	39D	49A	49C	59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84J1	84J2	84K	84L	110A	110B	130	계
일반 특별공급		16	1	–	2	–	2	18	7	–	3	15	3	14	2	–	–	3	3	3	3	–	–	–	9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8	–	–	1	–	1	9	4	–	2	7	1	7	1	–	–	1	1	2	2	17	10	4	78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8	–	–	1	–	1	9	3	–	2	8	1	7	1	–	–	1	1	2	2	17	10	4	78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16	1	–	2	–	2	18	7	–	3	15	3	14	2	–	–	3	3	3	3	–	–	–	9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	–	1	–	–	5	2	–	1	4	1	4	–	–	–	1	1	1	1	10	6	3	46
합 계		53	2	–	7	–	6	59	23	–	11	49	9	46	6	–	–	9	9	11	11	44	26	11	39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95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신청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대상 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1) 당해지역 거주자, (2) 추첨 순의 선정방법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156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4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미달시 타 시 · 도에 배정함)
-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호(2015.05.07)]"에 따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95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 (N–5)} (※ N = 6인 이상시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 519호(2015.05.08)]"에 따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 46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결정함.
-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호(2015.05.07.)]"에 따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 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카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은 제외 – 단독세대 및 배우자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 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와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본, 3세대이상 세대구성 청약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1통(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 본인 발급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발급기준(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출생일자 확인 필요한 기본증명서 : 자녀발급기준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및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하는 시 · 도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관련 증빙 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감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고,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 공통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 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 가능함.
- – 상기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아파트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에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하며, 85㎡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로 공급 함.
-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2015.2.27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 청약이 제한됨.)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위	신청 구분	신청 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1 순위	85㎡ 이하	•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 가점제(40%) / 추첨제(6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자동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2015.11.18 (수)	• 접수장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국민은행외 시중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접수시간 – 08:00 ~ 17:30	• 발표일시 – 2015. 11. 25. (수) • 발표장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www.heliocity–songpa.co.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아시아경제 신문에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추첨제		2015.11.19 (목)	• 접수장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국민은행외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접수시간 – 08:00 ~ 17:30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청약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제외).
- – 상기 인터넷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이며 청약 신청 중에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2순위는 주택청약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 – 견본주택 내에서는 현장수납 및 청약접수가 불가함.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로 규모를 선택할 경우 청약신청 당일까지 규모선택이 가능하나, 규모를 이미 선택한 경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이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 2015.2.27개정)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 든 면 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NH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2조에 의거 1순위 85㎡이하는 일반 공급물량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청약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 항목	가점	가 점 구 분	점수	가 점 구 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 제8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	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과세대장 등 처리일) 기준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 · 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인정기준
  -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특별공급 시 적용 제외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3. 일반공급

-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 선택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되며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공급함.
-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1층이 없는 주택형은 해당 층 중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4. 청약신청 방법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일반특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	•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 불가)	• 견본주택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송파 헬리오시티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2순위	•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일반공급 청약접수 종료시간인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5.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대상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임.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노부모특별공급은 제외 됨)
-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6. 은행창구 청약신청 (일반분양 신청자 중 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구 분		구 비 서 류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 신청시 관계확인이 가능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도장 및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7. 2순위 청약 신청금

구 분	청약 신청금	비 고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뱅킹 에서 자동출금 (청약신청전 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청약시(09:00~16:00) : 가능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8. 2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당첨자 포함)

환불기간	환불장소	은행창구 청약신청자 구비서류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11/26) 이후 평일 09:00~16:00	– 인터넷 청약신청자 :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 본인확인증표(창구 청약시와 동일) –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 은행창구 청약신청자 :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	제3자 대리환불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도장 및 본인확인증표(창구 청약시와 동일)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에서 환불받고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창구 청약자 중 접수은행 본인명의로 자동 환불 신청시, 당첨자발표 익일 영업일에 해당계좌로 자동 환불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추첨일 당시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청약 할 수 없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 ·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KB국민은행 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11.25(수) ~ 2015.12.04(금) (10일간)	
전화 (ARS)	전화번호	KB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번호 : 9 → 1 → 3)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누름	
	이용기간	2015.11.25(수) ~ 2015.12.04(금)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11.25.(수)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경우 당첨 여부 문자메세지 전송 가능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5. 12. 01 (화) ~ 2015. 12. 03 (목) [3일간 / 시간 10:00 ~ 16:00]　• 계약장소 :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견본주택 주소(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효력이 상실됨.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

• 분양대금 관리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515501–01–246290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외3)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무통장 입금증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분) – 직계존 · 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아래 참조)

-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음.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행정구역, 단지 및 단지 내 명칭, 동 ·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외국인(시민권자)는 계약전에 서울시 송파구청에 토지 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등에 준함.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의 2]
  - – 사업주체는 동 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내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관련 유의사항
  -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 계약자 대출안내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이자후불제)
-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분양 미계약 동 · 호는 일반분양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미통보시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문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장비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천원 / VAT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9A	2,850	285	2,565
39B	4,050	405	3,645
39C	6,690	669	6,021
39D	2,850	285	2,565
49A	3,090	309	2,781
49C	7,710	771	6,939
59	9,740	974	8,766
84A	11,720	1,172	10,548
84B	11,720	1,172	10,548
84C	11,720	1,172	10,548
84D	11,720	1,172	10,548
84E	14,730	1,473	13,257
84F	10,100	1,010	9,090
84G	11,740	1,174	10,566
84H	13,700	1,370	12,330
84I	12,190	1,219	10,971
84J1	12,320	1,232	11,088
84J2	12,320	1,232	11,088
84K	12,190	1,219	10,971
84L	13,550	1,355	12,195
110A	15,690	1,569	14,121
110B	15,320	1,532	13,788
130	15,820	1,582	14,238

2.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추후 별도 안내예정

3. 유의사항

-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시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 및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일정 별도 통지 예정)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 · 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 발코니 일부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드레스룸 형태, 선반 개수, 사이즈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 추가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 • 추가선택 품목은 타입별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쿡탑, 광파오븐, 팬트리, 전동빨래건조대 등임
-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 · 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임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목재문(본틀 및 문선, 문짝, 목재공틀),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스마트도어록	욕실 문틀 하부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스틸 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실외기 그릴창
바닥	마루, 발코니타일(몰탈 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재료분리대	바닥 난방 및 시멘트 몰탈(난방 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가변형벽체, 거실(아트월)	조적공사,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도장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텐박스, 발코니 천정 도장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사리, 천장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비상폰	조적, 방수, 미장, 전기 · 설비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쿡탑, 렌지후드, 액정TV 및 액세서리), 수전류	소방관련 시설, 주방 배기덕트, 배선 및 배선기구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가구, 붙박이장, 파우더(화장대)장, 반침장, 수납선반 및 기구	–
조명기구	부착, 거치형 조명등 기구	매입형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39A	39B	39C	39D	49A	49C	59	84A	84B	84C	84D	비 고
금 액	13,720,452	13,756,223	13,964,143	13,736,102	16,202,072	16,300,443	18,802,184	24,138,784	24,538,974	24,563,566	24,614,987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은 일괄선택 사양임(개별선택불가)
84E	84F	84G	84H	84I	84J1	84J2	84K	84L	110A	110B	130	
24,532,267	24,630,637	24,241,626	24,304,226	24,069,478	24,069,478	24,069,478	24,147,727	24,306,462	31,357,839	31,541,166	36,645,255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에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 입주예정월 : 201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
  - – 사전점검 대상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 사업주체가 주관하는 본 사업 인 · 허가,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인가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송 등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일정이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 지정일이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은 사업주체가 이행하여 사업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개별 통보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 · 토목 · 기계	소방통신	전기
회사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세광티이씨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28,245,470,000	5,225,000,000	1,968,107,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944,391,630,000 원	제 2015–0128–00006031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 보증기관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기관이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방법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대지비 감정평가금액 및 기관

(단위 : 원)

감정평가기관	㈜하나감정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감정평가금액	3,999,069,988,000	3,944,572,860,000	3,971,821,424,000

※ 상기금액은 아파트 대지 전체 감정평가 금액임

■ 공동주택성능 등급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녹색건축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우수등급	1등급	범죄예방설계 도입

※ 상기 인증절차 진행 중이며, 그 외 CCTV(200만화소) 시스템, 세대별 층상배관, 전기(급속)충전시설(12개소) 등 적용하였음

고기밀 창호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구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실별 온도 조절기	절수 설비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은 평형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임을 확인한다.
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착오가 없도록 한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3.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5.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이다.　6.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조합분양 당시 촬영된 영상으로 일부 마감 및 시공사항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계약전에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한다.　8.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9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다.
10.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11.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12.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다.　13.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나 추가 요구도 시공자에 할 수 없다.　14.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5.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갑" 및 "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한다.
19.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21.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은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입주 절차에 따른 세대 Key 인수 후 가능하며 해당 공사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2.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23.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한다.　24.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한다.　2. 당해 사업에 사용된 "병"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5개의 생활권(P1~P5)으로 나누어져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7(주택단지)의 '다'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주체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분양하였으므로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등)도 하나의 단지로 관리 및 운영된다.
4. 확정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설계변경, 지적정리 등에 따라 공부상 대지면적 등 단지의 주택형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테리어 및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분양면적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을"은 이의없이 동의한다. "갑"은 "을"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다.
5. "을"은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 및 주변현황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단지 모형 및 도면과 분양 카달로그 상의 배치도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지 내 현황(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지하기전시설, 지상돌출물, 환기구(DA), 지상/지하 쓰레기 재활용 관련시설, 단지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학교부지 포함), 공원(기부채납공원 포함),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공항 등에 의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될 수 있다.
6. 이 계약내용은 관련 관청 협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동의한다.
① 단지 내 시설물(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등) 및 입면조형물, 옥상조형물, 외부색채, 미술장식품, 야간경관 등
② 조경식재와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위치, 삭제 등　③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7.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 이후에도 조합요청 및 견본주택 축조시 변경사항, 조합과의 도급계약 변경사항, 품질 개선사항, 미관 및 기능 개선사항, 도면 및 법규 오류 수정사항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9. 관련 관청 인허가 조건 변경, 각종 인증(녹색인증, 건물에너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및 영향평가 등의 본인증, 단열재 두께 및 방수 등의 공법 변경 등에 대한 설계변경에 "을"은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0. 건축, 조경, 익스테리어 변경 등에 따른 유관공정(건축 · 조경 · 인테리어 · 구조 · 설비 · 전기 · 토목 · 소방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유관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에 "을"은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1.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사용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본 아파트 사업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등)는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3. 본 아파트 단지내에는 전력 및 도시가스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3개소) 등의 인입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다.
14.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 상품개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경미한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15.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위치모형, 단위세대 Unit,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 CG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는다.　16. 단지의 특성상 이삿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하며 동별에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이삿짐의 인력 운반거리는 차이날 수 있다.
17. 동간 거리 등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에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세대간 생활소음, 외부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입지여건상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해서 "갑" 및 "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or 청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19.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계류, 생태연못 등)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20. 계약 이후 "을"이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1.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22.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23.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시설물의 위치, 단지 주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조경시설(수목 · 수경시설 · 휴게시설 · 놀이시설 · 체육시설 · 포장 등), 기부채납 공원 · 녹지,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조경석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부지주변 개발 지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한 단지주변 도로의 미시공 또는 인접 부지와의 진입 관계로 인한 도로레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24. 단지내 옹벽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축소 또는 삭제될 수 있다.　25. 단지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와 인접한 녹지 및 포장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다.
26. 단지 우 · 오수는 옥외배관 및 기반시설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다.　27. 경비실의 위치는 문주가 신설될 경우 연계하여 위치, 형태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28. 단지조경(녹지 · 수목 · 수경시설 · 휴게시설 · 놀이시설 · 체육시설 · 옥상조경 등)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다.　29. 배치상 일부동은 근린생활시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등)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등)의 실외기가 조경공간에 설치 될 수 있다.
30.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정화조 배기탭,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침해 및 그 밖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미관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설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31. 각 아파트 주동 필로티 또는 1층에 설치된 로비공간(우편물보관소 등)은 공용시설물로 관리 여부에 따라 우편물 분실 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32.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배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33. 조경 식재(장송 등) 계획으로 인해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34. 공공장소인 휴게공간(조경시설)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관리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다.　35. 각 동 저층부세대는 기존도로와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내부순환가로공원 및 데크 등과의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환경권(차량소음 및 진동, 전조등 빛 공해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을"은 계약시 해당세대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36.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 기능 ·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주차면 위치, 주차동선, 확장형 주차 비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37.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경비실, 주차게이트, 차수판,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다.　38. 대관 협의시 필요에 따라 단지주변에 방음벽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 등에 의해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양재대로에 면한 111동,112동,219동,417동,418동 및 송파대로에 면한 404동의 전면에는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5~10m 높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　39. 보육시설 2개소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40.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가 생길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다.
41.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 등으로 선형, 식재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다.
42.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의 개선을 위해 상세 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삭제, 추가될 수 있다.　43.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대관업무 및 주변단지의 민원 등으로 현 위치에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4.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 경비실, 학습시설, 보육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시설,기계실, 전기실, 빗물저류조 등)은 기능, 구조, 성능 등 상품 개선을 위하여 평/입/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의 위치 및 개소, 외부마감재 및 지붕재료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다.　45.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6.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다. "을"은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7.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가 단일택지로 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 동선은 아파트 차량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차량관리는 입주 후 선정된 관리업체에서 한다.　48. 정화조, 정화조 배기탑, 쓰레기 분리수거소, 급 · 배기구, 자전거 보관소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정화조 배기탑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분진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49.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다.　50.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다.
51.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병"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52. 각 동의 세대 중 외벽에 석재등의 마감재가 시공되는 층수의 세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다.　53.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된다. 현관바닥, 디딤판, 욕실선반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54. 아파트 로비 및 피로티의 평면, 입면 계획 (지하층 및 1층의 로비/복도 계획, 주동 썬큰 부분의 창호형태 및 재료, 피로티 출입구간의 펜스의 형태, 피로티 내부 재료, 디자인, 램프의 위치 및 길이 등) 등은 '상세 계획을 통하여 현재 분양자료와 다르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55. 주동 및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전실 등)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 계획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다.　56. 주동 필로티층 상부(2층 부분)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57. 아파트 주동 출입구 및 피로티 부위 마감의 재료, 공법, 상세나누기, 디자인, 세부 사항 등은 시공 시 주변여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8. 주동 외부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다.　59. 아파트 주동 출입구 부위의 우편함 위치 및 제품규격은 주변여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0. 아파트 일부 동 지붕 및 옥상전면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된다.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의 반사에 의한 불편함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 집광판 수량이 전기사용량의 비율과 상이할 수 있다.　61. 각 주동의 지붕구조물(헬기구조공간 포함)은 향후 유지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상세 계획에 따라 구조 및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다.　62. 외부 상세 계획 등으로 인하여 옥탑 및 지붕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전면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 문주디자인, 외관색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입면 차별화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색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외벽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다.　64.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65.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고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200만화소)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7.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다. LED 측벽 로고 설치시 인접세대의 빛 산란 및 소음에 의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68. 본 아파트의 명칭,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다.
69. 입면 디자인에 따라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하기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창호 사이즈, 설치위치, 형태,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 콘크리트, 난간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 오픈발코니 유무, 설치 위치 등
70. 동, 호수에 따라 카달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71. 실외기실 및 대피소는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외기노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72. 배치계획과 주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73.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은 비확장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확장시에는 환기, 냉방설비 등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가중될 수 있다.　74.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75.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드레스실 가구, 확장형 및 확장선택옵션 가구, 기타 가구류 등), 등기구 및 배선기구류(각종 스위치 및 통합수구 류), 홈네트워크 기기(거실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스마트인포 등)는 현장 공사여건, 인테리어 디자인, 다른 마감과의 간섭, 사용성 개선 등으로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다.
76. 천장 속에 설치되는 환기, 소방, 전기설비 및 세대별 상이한 골조 형태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환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77.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인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다.
78.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다.
79.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80.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다.　81. 아파트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난간대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의 확장형 및 비확장형 선택에 따라 일부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82. 세대내 창문은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타사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83. 실외기실 그릴과 대피공간 창호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된다. 단, 법적 기준에 따라 층별로 개폐형태 및 재질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3층이하 대피공간 출입문은 플라스틱 도어 설치)　84.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좌/우 세대에 따라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85.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등의 활동시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86.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87.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등의 설치 위치 · 폭 · 높이 · 형태 · 디테일은 결로방지를 위해 실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88.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조적벽체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결로방지용 포함)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서 마감처리 될 수 있다.　89. 세대 발코니 중 세탁실 외벽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용 CAP(개폐가능)이 1~2개소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주의하여야 한다.
90.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바닥 배수구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다. 단,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오수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다.(단, 우수 선홈통은 설치 될 수도 있다)　91. 거실과 욕실, 거실과 발코니의 단차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구분되어 시공되며,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단차 치수가 변경될 수 있다.
92. 발코니 확장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의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
93.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결로현상은 생활습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을 통해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94. 확장시 세탁실이 PD의 간섭 및 평면 특성상 창호가 설치될 수 없는 평면 타입은 확장시 결로방지 및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 및 환기 디퓨저 등이 설치될 수 있다.
95.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외관상의 문제로 선홈통이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추가 벽체가 설치될 수 있다.
96. 비확장 발코니 부위의 확장 시 단열재가 설치된다.　97.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 등은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8.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다.　99.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벽 및 바닥, 발코니 및 현관 바닥, 주방벽 등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다.　100.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릴 수 있다.　101. 실외기실의 에어컨 냉매박스 및 배관의 위치 등 세부 레이아웃은 세대별 설치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02. 세대 환기용 설비가 세탁실에 설치될 경우 환기설비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장(또는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부위는 천장의 높이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낮아지거나 커텐박스 길이가 축소되고 점검구가 설치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103.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고 커텐박스의 크기도 부위별로 달라질 수 있다.　104. 본 공사시 주방장의 간섭부분으로 일부세대 주방 창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105.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시에는 해당세대에 단열재 추가로 인해 벽체돌출 및 우물천장 폭 축소, 단차형성 깊이 감소 및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커텐박스 시공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106. 기본형 선택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다.
107.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때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다.　108. 세대내 창호의 형태, 크기, 색상, 문열림 방향 및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09. 발코니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그에 따라 배관노출, 입면,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0. 일부세대 보조주방천정에 설치된 실내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1.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된다.　112. 견본주택을 촬영하여 이미지는 발코니 확장시의 모습임을 인지한다.　113.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 체결토록 한다.　114.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된다.　115. 110A, 130A 형은 발코니 확장시 침실3을 다용도 창고로 유상옵션 선택 가능하며, 창고도어 및 내부 선반은 별도 유상옵션품목임을 확인한다.　116.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다.　117. "을"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다.　118.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및 외부 상세 설계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19.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120.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는다.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고, 상부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상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수납이 제한 될 수 있다. 가스 관련법에 의거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다.
121. 표기된 타입별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된다.　122. 표기된 사업승인도서상의 면적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다.　123.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124.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5.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126.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127.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다.
128.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29. 지하주차장 및 지하 연결통로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된다.　130. 지하주차장 구조는 RC+PC 복합화 구조로 변경될 수 있으며, PC복합구조에서 복합화는 일부 강합성 부재를 포함하여, PC부재(기둥,보,슬래브) 등의 크기, 형태, 강도 등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131. 지하주차장 램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로 인해 주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2.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이 5개구역, 지하3층이 4개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다.　133. 모형 및 카달로그의 옥상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34 단지외부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조건공사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된다.　135. 아파트 옥상과 인접한 세대는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에 관리인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6.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다.　137. 쓰레기 분리수거소의 위치는 APT주동쪽으로 쓰레기 반출입 됨으로 인하여 주변동에 차량소음, 냄새 등의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8. 주동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전실 등)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 계획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다.　139. 상위 계획에 의해 단지내 설치되는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 시설이나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다.　140.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따라 적용된다.　141.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42. "을"은 공급자의 분양대금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한다.　143.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대피창의 재질 및 개폐방식(여닫이, 미서기) 등은 사용성 개선, 하자방지 등을 위해 착공 이후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144. 301동, 502동 부근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45. 112동, 218동, 318동, 402동, 516동 지붕층에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됨에 동의한다.　146. 59 type (25평)의 대피공간은 바닥에 햇치 커버와 피난용 사다리가 일치되어 설치됨에 동의한다.　147. 단지중앙 2, 3권역 사이의 선큰 벽천은 물의 낙차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접한 주변 주동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48. 1구역의 탄천 유수지에 인접한 세대는 악취, 소음, 해충 등에 의해 생활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9. 1구역의 111동에 인접하여 광역하수관 및 유수지 옹벽 등이 대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향후 인허가권자(송파구청)에 의한 영구 지상권 등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0. 서울시의 경전철 위례 신사선 정거장이 탄천교 사거리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11동에 인접하여 향후 일부토지가 수용될 수 있다.　151. 단위세대 실별 비 내력 칸막이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2. 지하주차장의 지면과 직접 면하는 주동부 코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경우 결로 방지를 위한 이중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3. 130A type (49평) 및 150A type (58평)의 부부욕실 샤워부스의 유리 칸막이 디자인은 견본주택의 POP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4. 1권역의 생태학습실에 인접한 세대는 외부 마감자재에 의한 빛산란 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55. 사업부지는 비행안전구역(2구역, 6구역)에 속하여 일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관청, 시행자, 시공자 등에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156.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사업주체명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법인등록번호: 116271–0004414)

■ 시공업체명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 – 0279433) / 현대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 – 0007909) /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 – 0015762)

■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 / 분양안내 : 02–449–744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문의 449-7440

www.heliocity-songpa.co.kr

총 9510세대 중
일반공급 1558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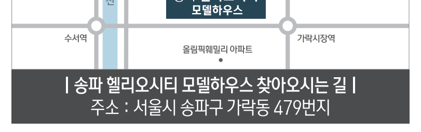

| 송파 헬리오시티 모델하우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시행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